

2023년 노원구 한파 극복「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」공고

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과 맞물려 난방비 인상 및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원구 내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여 비용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**2023년 노원구 한파 극복 「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」**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9일

노 원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「2023년 노원구 한파 극복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」
2. 신청기간 : 2023. 2. 20.(월) ~ 2023. 4. 14.(금)
3. 지원내용 : 사업장 기준 10만원 1회 지원(계좌입금)
4. 지원대상 : **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'23년 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**

※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

- 사업자등록증상 (주된)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**노원구**
- 개업일이 '22.12.31. 이전이며 **공고일 현재 임차 사업장**
- 매출증빙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이 가능한 사업장
-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**소상공인**

<지원제한 및 제외대상>

지원 제한	-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지원 제한업종(붙임1) ※ [붙임1]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 참고
	-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·학교·종교단체 등 공공시설
	- '23년 기타 노원구 난방비 지원 대상(어린이집 등)은 중복수혜 불가

제외 대상	- 무등록 사업자
	-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상태 또는 사실상 휴·폐업인 사업자
	- 매출액 확인 불가자
	-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(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전자상거래업 등)

※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치

5. 신청방법 : 온라인(노원구청 홈페이지) 및 현장접수(노원구청) 병행 신청

○ 신청 주체 :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

- 사업자등록증상 **대표자가 신청**하고,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1개의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(공동 대표)인 경우 중복지원 배제
※ 공동 대표의 경우 통합위임장 등 추가서류 제출 必
- 관내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이상 사업장 운영시 1개소만 지원 가능
- **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 가능**
-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(신용불량자 등)이 있는 경우 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) 계좌로 수령 가능 ※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도 수령 가능

○ 온라인 접수 : '23. 2. 20.(월) 10:00 ~ 4. 14.(금) 18:00, **노원구청 홈페이지**

- 신청방법 : 노원구청 홈페이지 특별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

※ **2.20.(월) ~ 2.24.(금) :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**

신청일자	2월 20일	2월 21일	2월 22일	2월 23일	2월 24일	2월 25일~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	1, 6	2, 7	3, 8	4, 9	0, 5	모두 신청 가능

○ 현장 접수 : '23. 3. 06.(월) 09:00 ~ 3. 31.(금) 18:00, **노원구청 6층 소당앞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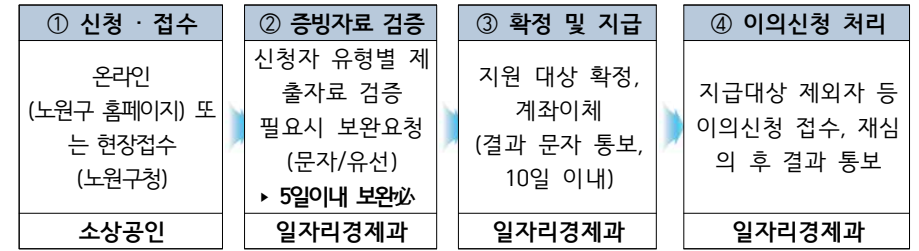
※ **3. 6.(월) ~ 3.31.(금) : 접수기간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**

신청일자	3월 6일	3월 7일	3월 8일	3월 9일	3월 10일	3월 13일~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	1, 6	2, 7	3, 8	4, 9	0, 5	모두 신청 가능

○ 제출 서류

대상 유형	제출서류
① 온라인신청 및 현장접수 공통 필수서류	①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(법인의 경우 법인)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(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) ③ 매출신고서류 :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21년 또는 22년) *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,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④ 임차사업장 증빙자료(상가임대차계약서 등) /공인중개사 작성 여부 확인 ※ 당사자 간 협의 작성(직거래)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▶ 월 상가 임차료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서 (최근 3개월 출금 내역서, 은행 직인 필수) ※ 사업 대표자와 상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다를 경우 ▶ (가족의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/ 직계 존비속, 배우자 확인 ▶ (그 외) 월 상가 임차료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통장거래 내역서 (최근 3개월 출금 내역서, 은행직인 필수) ※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용 포함계약은 제외
	▶ 오프라인신청 시 추가서류 ※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
② 현장접수 신청	① 노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재직증명서 (법인직원이 신청하는 경우)
	▶ 대리인신청 시 (대표자 본인 신청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) ※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▶ 타인계좌 수령희망 시 (계좌압류 등) ※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※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
	① 통합위임장 (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)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(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)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③ 수령자 통장 사본 ④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⑤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협약서 ⑥ 개인정보수집이용/제공동의서(노원 영세임차 소상공인지원금 타인명의계좌이용시 희망계좌명인인) ⑦ 기타증빙서류

6. 신청 및 지급 절차



※ **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5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**

7. 유의사항

- 지급일 : 신청 및 서류구비 완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
 ※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
- 증빙서류 등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,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
 ※ **5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**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
- 중복수급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

8. 문 의 처 :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

☎ 02-2116-3493~3494 (평일 오전9시~오후6시)

- 붙임 : 1.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(중소벤처기업부 제2022 - 608호 발표) 1부.
 2. 각종 서식 1부. 끝.

붙임 1

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 부동산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

표준산업분류	업종
	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홍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청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